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산업체의 시험평가 등 비용 보상근거 마련〉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15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방위산업 육성사업) 개요.....8
2. 개정내용과 유사한 입법례 및 운영현황.....10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 2) 발의연월일 : 2025. 8. 6.
- 3) 회 부 일 : 2025.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 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그리고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획득은 연구개발과 구매를 통해 이루어짐.
이중 국내구매절차는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대상 선정,
시험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 납품 순으로 이루어짐.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절차]

구매계획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과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 수립
입찰공고	구매계획에 따라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
시험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할 무기체계 또는 장비 선정
시험평가 및 협상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상호 보완하여 수행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작전운용성능, 군운용적합성 등을 판단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의 충족 여부 평가
기종결정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할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 결정
구매계약 체결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종에 대해 구매계약 체결
납품	방산업체 생산 및 납품

구매시험평가는 제안서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장비가 군의 작전 운용성능과 요구사항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필수적인 절차임.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적합성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임.¹⁾ 시험평가 항목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73조(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①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에는 주요 작전운용성능,²⁾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³⁾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⁴⁾ 등이 포함됨.

□ 이와 같은 구매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국내구매절차에 따라 획득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에 구매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 현행 제도에서는 군수품 등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방산업체가 구매시험평가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의 보상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비용의 보상 규정이 없음.

⑦ 제6항제5호의 시험평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능 충족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다. 기타 제안요청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영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처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4. 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

2) 무기체계가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임.

3) 다양한 무기체계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임.

4) 장비 도입 후 실제 운용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서도 시험 평가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매시험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방산업체는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으며 국내 구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재무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무기체계 구매절차나 방위산업 육성 사업 등의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구매시험평가, 국방중소·벤처 기업 지원사업에 수행·참여⁵⁾했으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⁶⁾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 대상 및 보상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음.

먼저,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구매시험평가의 경우 국내구매 입찰 참여업체 중 구매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5) 참고자료: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방위산업 육성사업) 개요

6) 참고자료: 2. 개정내용과 유사한 입법례 및 운영현황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지급하고,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업체 중 종합평가점수가 ‘합격기준’을 넘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지급할 예정임.

다음으로,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구매시험평가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의 3%(최대 14억원)⁷⁾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1개 기업 최대 지급액은 비용분석서에서 산출된 비용으로 한정⁸⁾하고,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1개 과제당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문 의 처
02)6788-5312

7) 최근 5년간 구매사업 사례를 분석, 예산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

8)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입찰자의 비용분석서 중 최저비용(낙찰자 포함)

※ 참고자료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방위산업 육성사업) 개요

□ 의의

산업구조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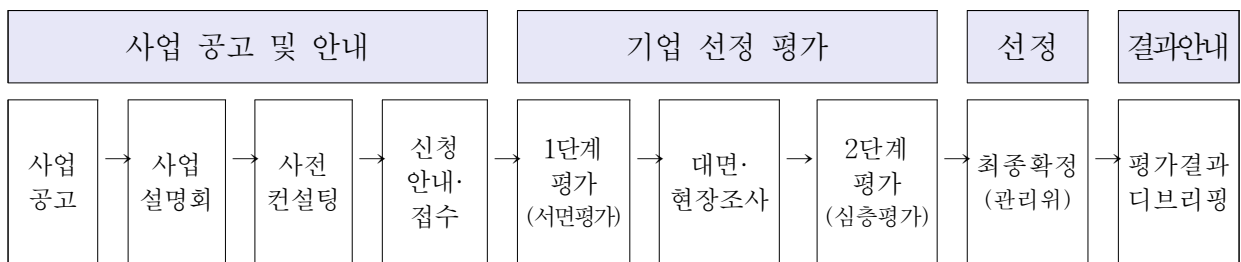
1.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따라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부품개발, 시험평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사업 및 예산액

(단위: 억 원)

사업명		'25년 예산액	'26년 예산안
국방벤처지원사업	민간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지원	123.51	145
글로벌 방산강소 기업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품의 개발부터 해외수출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142.41	210
GVC30 (신규)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 지원	76.46	301
방산혁신기업 100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분야(드론, AI, 반도체등) 중심의 기업 육성	398.81	658

□ 사업추진 절차도



2. 개정내용과 유사한 입법례 및 운영현황

구 분	대형공사계약 (국토부)	경쟁적 대화	소프트웨어사업 (과기부)	공공디자인용역 (문체부)
근거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제107조(기술제안 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 86조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1조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17조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13조(제안서의 보상)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보상 대상 및 선정 기준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 고득점순 5인	20억원 이상 사업,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 낙찰자와 점수 차이 5점 미만 고득점순 2인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 고득점순 2인
총 보상 금액	예산의 2%	예산의 1.5% (최대 3억원)	예산의 1.3% (최대 1억원)	예산의 5% (최대 300만원)
분배 기준	순위별 차등 분배	순위별 차등 분배	순위별 차등 분배	균등분배